

운	영	위	원	회
소				관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육영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김육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8월 21일

발의자 : 김육영, 오중균, 소형준, 이용진,
양순임, 이인순, 경수현, 정해숙,
정기혁, 정병기, 강수진

1. 제안이유

- 가. 「민법」 및 「행정기본법」이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개정(시행 2023. 6.28.)됨에 따라 만 나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.
- 나. 상위법령 제·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오기사항 등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하고자 함.
- 다. 조례 본문 체계상 인용조문의 오류를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만” 표시 용어를 삭제함(안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7항)

나. 상위법령의 제·개정사항 반영함(안 제24조제11호, 제25조제8항)

다. 인용조문 변경 및 오류사항을 정비함(안 14조부터 제16조까지, 제19조,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, 제29조, 제3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민법」, 「행정기본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23. 8. 21. ~ 2023. 8. 26.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제13조제1항”을 “제14조제1항”으로, “제13조제4항”을 “제14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제13조 및 제14조”를 “제14조 및 제15조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17조”를 “제18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1조제3항제1호”를 “제22조제3항제1호”로, “제17조”를 “제18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제22조제2항”을 “제23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19조제4항”을 “제20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4항 전단 중 “제17조”를 “제18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17조”를 “제18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“제17조”를 “제18조”로, “제20조제1항”을 “제21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 본문 중 “제20조”를 “제21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제22조제1항”을 각각 “제23조제1항”으로 한

다.

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제21조제5항”을 “제22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1호 중 “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”을 “제5조의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2항제2호 중 “만 40세”를 “40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만 5세”를 “5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“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」”을 “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부”를 “성북구의회”로 한다.

제30조제1항 중 “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상”을 “제29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조(복장 및 제복) ① (생략)	제13조(복장 및 제복) ①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②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15조(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)	제15조(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·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(이하 “유연근무”라 한다)를 신청할 수 있다.	② ----- 제14조제1항 ----- ----- 제14조제4항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) ①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및 「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·대체공휴일(이하 “공휴일”이라 한다) 근무를 명할 수 있다.	제16조(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) ① ----- ----- ---- 제14조 및 제15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재직기간의 계산) ① 제17조의 재직기간이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르되, 연월일수(年月日數)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, 휴직기간, 정직기간,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해당 연도에 결근·정직·강등·직위해제 사실 및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7조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.

1. 병가(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)를 받지 않은 공무원
2.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

제19조(재직기간의 계산) ① 제18조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제22조제3항제1호-----

----- 제18조-----

-----.

1. --- 제23조제2항-----

2. 제20조제4항-----

조에 따른 연가일수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연가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,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제22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①
결근일수·정직일수·직위해제
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
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
가일수(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
제20조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
포함한다)에서 공제한다. 다만,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1조
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
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
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
다.

② (생략)

③ 제2항에서 “사실상 직무에
종사하지 않은 기간”이란 다음

제21

조제1항

제22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①

제21조

② (현행과 같음)

③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

④ (생략)

⑤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

제23조(병가)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·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, 제21조제5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

1. · 2. (생략)

② · ③ (생략)

제24조(공가)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제23조제1항-----
--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제23조제1항-----

-----.

-----.

제23조(병가) ① -----

-----.

-- 제22조제5항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공가) -----

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

1. ~ 10. (생략)

11. 「검역법」 제5조제1항에
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
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
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, 파
견,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
한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
할 때

제25조(특별휴가) ① (생략)

② 임신 중의 여사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,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

_____.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11. ----- 제5조의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-----

제25조(특별휴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

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)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

3. (생략)

③ ~ ⑥ (생략)

⑦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자녀돌봄 등을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.

⑧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」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⑨ ~ ⑭ (생략)

제29조(영리업무의 금지) 공무원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 40세

3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5세 -----

-----.

⑧ -----
-----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-----.

⑨ ~ ⑭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영리업무의 금지) -----

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,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,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<u>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</u>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. 1. ~ 4. (생략) 제30조(겸직허가) ① 공무원이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상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. ②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성북구의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제30조(겸직허가) ① ----- <u>제29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